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6. 2. 27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6년 2월 16일

회부일자 : 1996년 2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96. 2. 27)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 흥일성)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구원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출연근거, 보호목성책, 도와 연구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임.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충북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가. 주요골자

○ 설치운영 : 연구원 설립에 관련된 근거 마련(제2조)

○ 재무관리 : 출연금, 기금관리, 운영경비, 예산·결산등

○ 육성 및 감독

- 육 성 : 연구원을 지원·육성할 의무 규정

- 감 독 : 조사 또는 검사, 시정조치 또는 관계자 문책 규정 마련

○ 기타사항

- 준용규정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는 규정을 둘으로써 유연성 확보

- 규 칙 : 기타 필요사항 규칙으로 정함

- 부 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재평)

충청북도개발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구원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출연근거, 보호육
성책, 도와 연구원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인 관계로 이를 위한 개선책으
로 조례를 제정하여 충북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연구원의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 도정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 국내외 자본유치, 통상협력확대의 연구 및 자문
- 지방행정과 지역경제진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배포
- 국내외 연구기관의 교류·협력과 해외자료와의 비교·연구
-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연구의뢰 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둘째,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 기금은 도와 관내 각 시·군과 그외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출연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공유재산의 대부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활용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사업계획등 승인에 있어서는

-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 ① 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등

충북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5조 출연금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임의 규정은 시행되고 있는 타 기금 조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며,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조항은 비록 연구원장의 파견요청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 제14조, 제15조, 연구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료화될 우려가 있으며 감독기관인 도의 눈치를 살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답변 : 연구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출연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한행사로 운영에 대한 내부간섭이 아니고 연구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연구원 독려가 주목적이 되겠으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예산절약의 효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등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기획관 : 흥일성)

5. 토론효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1996. 2. 27

○ 제안자 : 이병두 의원외 4인

나. 수정이유

○ 본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도와 관내 각 시·군과 그외의 출연금, 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8조 "연구원은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로 도지사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기금을 출연하는 각 시·군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제8조(연구과제부여).... "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불임 서류

가. 충청북도 개발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대비표

나. 충청북도 개발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연구과제부여) 연구원은 "도지사가"를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